

# 예산총칙

제1조 : 2026년도 세입·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894,693,975	26,840,819
1. 일반회계	881,563,453	26,446,904
2. 특별회계	13,130,522	393,916
의료급여기금	1,587,623	47,629
주차장	8,995,717	269,872
주거환경개선사업	54,984	1,650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266,820	8,005
지하수관리	115,221	3,457
화력발전지역개발	2,110,157	63,305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4조 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2,900,000천원이다.

제6조 :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,610,397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